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2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규정 신설	3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2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23.

(3) 회 부 일 : 2025.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권에 대하여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들에 대한 부과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3년 이상 기간이 도과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부분을 적발한 경우와 같이 보험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포탈 시 최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에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

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삭제 및 제91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심사청구가 제기되거나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기초가 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공단이 그 변경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삭제 및 제9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1조(시효) ①·② (생략)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	제91조(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
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
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 설>

④ -----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 제척기
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
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
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
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
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
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
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
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이 항에 따른 기간보다 늦게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동안 보험료 및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나.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다. 제90조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라.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2.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기초가 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변경이 있음을 알게 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

	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함.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1조1)에서는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2)(이하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가산금’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거나 현행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거짓으로 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이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되³⁾,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휴직자등(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⁴⁾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⁵⁾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등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외에 보험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징수할 권리에 는 부과권과 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므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모두 소멸시효(3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⁶⁾

-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 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3) 참고로, 공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되나,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및 보험급여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여 단기로 규정하고 있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5판, 2024. 참조
- 4)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98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각 세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2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 제27조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다.

- 참고로,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의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이 중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함.⁷⁾
- 한편,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함. ‘제척기간’과 ‘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소급효 및 시효의 중단·정지가 적용되지 않음.⁸⁾

□ 그러나, 보험료등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한 이후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것을 적발하는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험료등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료등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⁹⁾, 가입자 및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⁰⁾

7) 박은경 외 4인, 법학통론, 박영사, 2025.

8) 양창수, 민법주해4-총칙(4), 박영사, 2022년

9) [참고자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보험료 미부과 사례 참조

10) 뉴시스, ‘거짓 수급’ 줄줄 새는 건보료 막는다...누수방지 2법 발의, 2025. 5. 25.자 기사

□ 이와 관련하여, 공단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을 대상으로 5,349만원을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¹⁾

< 최근 5년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결손처분 현황 >

(단위: 건, 천 원)

구분	건수	결손처분액			
		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2020	3	1,015	891	124	-
2021	7	6,738	6,103	635	-
2022	4	2,498	2,235	263	-
2023	4	31,990	29,393	2,597	-
2024	10	11,255	10,421	834	-
합계	28	53,496	49,043	4,45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등의 징수권 소멸시효 외에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험료등의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1)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자 관리 개선을 위한 가산금 독촉 고지 및 소멸시효 관리 강화와 함께 징수 가능성이 없는 가산금 채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2025년부터 최초로 추진함에 따라 2024년 이전 결손처분액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기초가 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공단이 그 변경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간 보험료 및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즉, 현행법에는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없어 현재 보험료등의 부과권 및 징수권 모두 동일한 시점(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¹²⁾를 적용받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둘 경우, 보험료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6년) 공단은 보험료등을 부과(납부고지 등)할 수 있으며, 보험료등 부과 이후에 별도로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가 기산되어 이후 3년 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

□ 참고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항(제27조)¹³⁾과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제26조의2)¹⁴⁾을 별도로 규정하

12) 현행법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대법원 2022두49793 판결)는 보험료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13)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고 있는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과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⁵⁾

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괴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偽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1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관련 법률관계가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여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데¹⁶⁾, 개정안에 따라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을 둘 경우 보험료 관련 법률관계가 조속히 확정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⁷⁾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로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로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16)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5판, 2024.

17) 참고로,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이 외에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

특히, 안 제91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기초가 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그 변경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료등을 정정
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단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초자료가 변경
된 경우에도 기한의 제한 없이 보험료등을 정정하여 부과할 수 있
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바,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 기초가 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인 사유를 열
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국세징수법」에서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
효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납부고지(부과)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18),

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급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
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두는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이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예: 납부고지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⁹⁾,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91조의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시효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²⁰⁾,

개정안과 같이 제91조의2에 건강보험료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준용 규정에서도 제91조의2의 부과제척기간을 준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 넷째, 법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안 제91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는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현행법에는 ‘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91조(시효) 규정의 징수권에 부과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중인데, 이에 따라 허위신고, 명의대여·도용, 자격변동, 통상임금 소송 등으로 3년 이상 지난 후 보험료 부과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여 성실납부자와의 불형평성과 부과권 상실로 인한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부과권 확보를 위한 제척기간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담 회피를 위한 허위신고, 명의대여·도용, 자격변동, 통상임금 소송 등 3년 이상 기간 경과 후 보험료 부과권이 확정되

는 경우 공단이 정당하게 부과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 및 재정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 따라서 「국세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함으로써 사각없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단이 당초 부과했어야 할 보험료를 적정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자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보험료 미부과 사례

○ (사례1)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자 소급 변경 전 보험료 미부과

- ▶ 장○○은 '17.6.1.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후, 약 3천만원 체납 상태로 '19.4.1.사업장 탈퇴
- '19.9월 명의도용을 사유로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했고, 관할 세무서는 실질 사용자인 이○○에 대하여 '17.4.1.자로 소급하여 과세처분 하였으나, 공단의 경우에는 실질 사용자인 이○○에 대하여 '17.6월~'19.4월 보험료의 경우 3년 시효도과로 보험료 부과 불가능한 사례 발생

○ (사례2) 허위취득 적발에 따른 자격 소급 변동시 보험료 미부과

- ▶ ○○사업장은 '18.1.1.자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25.2월 지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 직장가입자 4명 허위취득자로 확인되어 그 직장자격을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하고, 동일 기간에 대해 지역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 부과시효는 '25.2월 기준 3년으로 '22.2월 이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 불가능하여, 총 보험료 부과할 금액 84백만원 중 49백만원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사례3)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득되는 경우 보험료 미부과

- ▶ △△사업장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A씨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취득신고 누락, 추후 지도점검으로 자격취득 처리
- A씨가 지역가입자였으므로 직장 자격 취득시점까지의 지역보험료는 전액 환급처리되나, 직장보험료는 부과 소멸시효로 22년부터 부과 가능(20, 21년도 부과 불가)

○ (사례4) 통상임금 소송결과 따라 약 300억 원 이상의 재정손실 발생

- ▶ 근로자 B씨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2014년~2018년) 제기(2019년), 승소(2021년)
- 건보공단에서는 2014년부터 발생한 모든 임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2021년 말)
- (소멸시효) 통상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소송에서 공단이 최종패소하여, 시효가 도과된 2014~2017년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

○ (사례5) 소득금액이 소급하여 경정되었으나 보험료는 일부만 부과됨

- ▶ 프리랜서 C씨는 2024년 세무당국의 조사로 최근 5년 간의 소득이 인상되었음
- 당초 C씨의 소득은 최근 5년 간 매년 연 2,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연 4,000만 원으로 변경
-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 간의 경정소득 자료를 연계받았지만 최근 3년 간의 소득만 부과에 반영하였으며 2년의 소득은 보험료 미부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